### 2013학년도 고등학교

#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1 . 총 칙

#### 1. 방침

- 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단, 군산시·익산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기 전의 구 옥구군 지역과 구 익산군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제2005-10호(2005.12.15) 제3조의 별표2의 군산시와 익산시 지역]
- 나.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의 전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한다(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제3조).
- 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라. 중퇴자의 재입학 및 편입학
  - 1) 중퇴자는 원칙적으로 원적교에 재입학하도록 한다.
  - 2) 원적교에 중퇴자의 재입학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타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
  - 3)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한 타교 편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감이 편입학할 학교 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4)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2/3이상 출석)안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 5) 자퇴·퇴학한 학생 중 원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퇴·퇴학한 학년도와 동일 학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다.
- 마.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학

- 1)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학할 수 있다.
- 2)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한 동일지역 타교 전학이 안 될 때는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 1)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2)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학 조치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전학할 수 없다.
- 사.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귀국자 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에 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한다.
- 아. 전(全)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 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입학을 불 허할 수 없다.

#### 2.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 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허용한다.(단, 총합이 정원 외 허용범위 5%를 넘더라도 전·편·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정원내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내로 전환 관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82조, 중등교육과-3947, 2006.03.06).
  - 1) 유급생(의무교육유예자, 정원외 관리자, 휴학자 등 포함) : 대상자 전원
  - 2)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대상자 전원
  - 3)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 대상자 전원
  - 4) 야간부 고등학교 휴학자, 자퇴자, 중도탈락자 중 야간부고교 폐교로 재입학할 수 없는 자 : 대상자 전원
  - 5)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 제89조 제5항) : 해당학년 정원 외 3% 이내
  - 6) 가정폭력 피해학생 비밀 전학 : 대상자 전원

- 7)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대상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해당학년 정원 외 3% 이내
- 8)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해당학년 정원 외 2% 이내
- 9) 일반 귀국자 : '3-가-6)'항의 특례귀국자 인원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 외 3%이내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해당학년 정원 외 3% 이내
- 11)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 해당학년 정원 외 2% 이내
- 12) 타 시·도 전입자 및 군인 자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해 당학년 정원 외 3% 이내
- 13)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나. 타 시·도 전입자 중 타 시·도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포함) 및 산업체(혁신도시 내 이전 산업체 포함) 직원, 혁신도시 내 의 건설 관련 직원 자녀는 '가'항과는 별도로 정원 외 5%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단, 혁신도시 건설관련 업체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가'항과 '나'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 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학교에서는 편입학으로 업무 처리
  - 1) 편입학 대상
    -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2학기(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 2) 편입학 절차
    - 가) 입학 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입학신청서는 해당학교 제공).

- 나)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제적·자퇴)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등을 활용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 라)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 마)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입학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다.
- 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NEIS 학적처리 포함).

#### 3) 심의 기준

- 가) 허용 범위는 해당학년의 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학년결정 입학 신청일 당시 존재하던 결원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허용 이전에 전입 학 등으로 충원된 경우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나)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고등학교 학력인정 교육시설에서 2학기(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학습 시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학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 한다.
- 라)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학습 학기 평균 13주 이상이며,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함.).
- 마) 해당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 기준 및 불합격 기준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안내하여야 한 다.

####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은 해당학교의 규정에 따라 실시 한다(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 정비).

- 일반고 지필평가 예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 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전문교과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 학)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한다.
- 나)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 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서 합격 여부 등의 업무처리 규정은 단위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라) 고등학교별 학년결정 입학 가능 학생수(특정일 기준) 등 입학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마)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자료를 해당 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 3. 전입학 허용 기간

- 가. 동일계열의 경우[일반고간, 특성화고(전문계고)간, 예ㆍ체능고간 등]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나.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대안교육 실시 고에서 타 학교로의 전입학 포함)
  - 2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다.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기한 내에 허용할 수 있다.

####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처리 원칙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Ⅱ.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 1. 전·편입학 대상자 및 정원 배정

#### 가. 일반학생

- 1) 타 시·도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재학 중에 전가족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배정한다.
- 2)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이외의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일반고 등학교 [이하 종합고의 일반계 포함] 주간부 재학자로서 전(全)가족 거주 지를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 배정한 다.
- 3)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에 전(全)가족 거주하면서 도내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일반계 자율학교 재학자로서 전(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 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전환에 학교장이 동의한 자(학교장 추천자)는 정원 내 배정한다. 단,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에서 동일 지역 내 전학은 불허한다.
- 4) 타 시·도 및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이외의 도내 타 시·군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예·체능고등학교, 대안교육 실시 고등학교 등의 재학자로서 전(全)가족의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 배정한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은 불허한다.
- 5) 기타 교육감이 전 · 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 나. 자퇴 및 퇴학생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 1) 재입학

- 가) 대상자 : 자퇴·퇴학한 학생 중 자퇴·퇴학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적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
- 나) 절 차 : 재입학 희망자는 원적교에서 "재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재입학 신청자 중 타 학교로의 편입학
  -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받지 못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라북도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전주·군산·익산 교육지원청)」의 적·부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준화지역 해당 거주지 학교군의 타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다.

#### 2) 편입학

- 가) 대상자 : 자퇴·퇴학한 학생 중 원적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 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원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 로서 전(全)가족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에 거주하는 자
- 나) 일반귀국자는 원적교로의 편입학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비평준화지역 및 타 계열에서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의 편입학은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실시한다.

#### 다. 귀국학생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전(全)가족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에 거주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 해당자는 '귀국자 입학업무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에 의거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한다.
  - 특례 귀국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일반 귀국자(위 법령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 ※ 구체적인 사항은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업무 처리요령,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일반귀국자 전·편입학업무 처리요령 참조

#### 라.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추천자)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지속적인 집단따돌림, 집단 폭행 등 선의의 피해를 받아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어 학교장이 다 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 및 요청한 자
- 3) 학교장이 심각한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 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대상자(학교장이 요청한 자) 정원 외 배정대상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항에 따라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하여 학교장이 전학조치를 요청한 자

#### 바. 다자녀 가구의 자녀(정원 내)

다자녀 가구(동일 부모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의 자녀가 본인(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거주지에서 최단거리의 학교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평준화 지역 동일 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면 정원 내에서배정한다. 전입학 허용 조건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구의 대상자'는 전입 신청일(배정원서 제출일) 현재 동일 부모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만약, 다자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쌍생아인 경우 쌍생아를 동일학교로 전입학 허용한다.

#### 2. 방침

- 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는 동일지역 내 전·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특례귀국자·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체육특기자 등은 예외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 나.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내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예·체능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진로변경으로 인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내 일반고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예·체능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용할 수 있다.
- 다.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합격한(배정된) 학생이 입학 전 평준화지역(전 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학(배정)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

거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입학 전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

- 라.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에 배정되었거나 재학한 학생이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원적교에 배정한다.
- 마.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에 배정 및 등록한 후 해외유학을 다녀온 귀국자, 재입학생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전입학 희망자는 원적교(전출 이전의 재적학교)에 배정한다. 단, 결원이 없을 경우는 정원 외로 배정한 후 정원 내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 3.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기

#### 가. 전입학

- 1) 동일 계열로의 전입학은 3학년 1학기 2차고사(1학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허용하고,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은 2학년 1학기 2차고사(1학기말고사) 실시 전까지만 허용한다.
- 2)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전입학을 허용하는 자
  -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대상자 중 [타 시·도 및 도내 타 시· 군의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 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예·체능고등학교, 대안교육 실시 고 등학교 등의 재학자로서 전(全)가족의 현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전주·군산 ·익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로서 재학학교에서 제1학년 2학기 학 교생활기록부에 의한 이수교과목별 전(全) 교과 성적의 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나)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중학교 졸업자 또는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가 타 시·도 일반고등 학교에 재학하면서 전(全)가족이 거주하는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동의를 받은 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나. 재입학

- 자퇴·퇴학자는 원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장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前)까지 수시로 허용

#### 다. 편입학

- 자퇴·퇴학자가 원적교가 아닌 학교로 복적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2학기 전(前)까지 허용할 수 있다.

#### 라.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입학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어 입학 희망학교에 해당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까지 허용 여부 통보

#### 4. 구비 서류

#### 가. 일반학생

- 1)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공통
- 2)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공통
- 3) 재직증명서 1부(군인자녀,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건설 관련 직원, 산업체 직원 자녀)
- 4)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특성화고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 예·체능고교, 대안교육 실시 고등학 교 재학자, 타 시·도 전입자
- 5) 학교장 전출 동의서(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추천내용 포함) 1부 및 자율학 교 지정 공문 사본 1부(타 시·도 일반계 자율학교 재학자)
- 6)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1) 부 또는 모가 학생과 동일 지역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혹은 재직 증명서(직장인), 가족관계 증명서
-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친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주민등록증 사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전학 위임내용)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 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각 1부(이전 전세계약서 및 현재 전세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담임의견서 첨부(담임교사 서명 및 학교장 직인 날인)

#### ※참고사항

- ①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② 부모가 가정사 등으로 함께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③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나. 자퇴 및 퇴학생

- 1) 재입학: 재입학원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2) 편입학: 편입학원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 원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원적교 재입학 불가 사유 포함)

#### 다.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학교장 추천자)

- 1) 공통
  - 전입학배정원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작성자인 담임교사가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 인함.
  - 학부모 사유서 1부(가정폭력 피해학생은 제외)
  - 전입할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 1부(학교장 간의 합의에 의해 전학하는 경우)
- 2) 가정폭력피해학생 : 보호시설 거주 확인서 혹은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 3) 집단따돌림, 집단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해당자)
- 기타 피해 입증 증빙서류
- 4) 심각한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이 기재된 경우)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전학 대상자(학교장이 요청한 자)

- 전입학 배정원서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장 전학 요청서 1부

### [서식]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지원자	성 명	(한글	⊒)	생년 월일				성 별	-		수번호  수일	20
	TILC				체육특	튀기자		배정	성 희망			국가유공자녀
	세2	2외국	H어선택과목명		지원	종목	제1지명	ţ J	레2지 5	y X	데3지망	보 훈 번 호
배정 유의			H어선택과 이 배정희망									
사항	반	<b>≡</b>	어선택과목을 고려하여배정희망  통학도 무방)									
	성	명	(한글)								집) 휴)	
보호자	전=	주소										
	현2	주소										
재 학 증	( 과·겨 있음 학	과· 11열) 13을 중 교주:	[자는 년 월 계열), 특수목적고 , 자율고( 증명함 <b>(</b> 쇼 : 자 : (	고( 그 ), 학 <sup>학</sup> 20	파·계열 력인정 년 <b>)</b>	), 특 각종 <b>고등</b>	성화고	( 제( <u></u> 장	과· )호	계열 t년	1), 예년	체능고(
참고 사항	등록	문기	적용지역 고등학 )에 대한 사실을 <b>(</b> . 전입자는 중학교 중	확인함 <b>2</b> 0	년	<sup>물</sup> )중 <b>호</b>	<sup>월 일</sup> 학교장	1 2			응시크	포기, 불합격,
	상기	의 교	같이 거주지가 이전	되어 전	변학하고	가 히	·오니 바	H정	하여	주시	시기 바	랍니다
배 정 희망원				20 지 원 7 보 호 7	7	<u> </u>	(	일 서 ( 서 (				
									_			수입증지
	전	라	북도(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i} 		

## 전(편)입학 신청서

1. 소속 : ( 2. 성명 : (	<i>)고등</i> 약교 ) 성별		/ 7 12 ( ) 12		
3. 주소 및 연락			전화	: (	)
-	위와 같이 귀교에 20	전(편)입 년 월		다.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1. 주 2. 지	민등록등본 1통 H학증명서 1통				
(	)고등학교	장 귀히	5}		
	절		•		_
	···· <sup>절</sup> 전(편)입학	취	선 선		-
1. 소속 : ( 2. 성명 : ( 3. 순위 : (	<b>전(편)입호</b> )고등학교 ) 성호	· 취 <b>학 신청</b> 교 ( 별(	선 <b>형 확인서</b> )학년 ( )반		)
1. 소속 : ( 2. 성명 : ( 3. 순위 : ( 4. 학교 전화번호	전(편)입호 )고등학교 ) 성호 ) : 교무실( ] 본교에 전(편)	·-취 <b>학 신청</b> 교 ( <sup>혈</sup> (	선 성 확인서 )학년 ( )반 ) ), 행정실 ( 신청하였음을		)
1. 소속 : ( 2. 성명 : ( 3. 순위 : ( 4. 학교 전화번호	전(편)입호 )고등학교 ) 성호 ) : 교무실( ] 본교에 전(편)	다취 <b>학 신청</b> 교 ( 멸(	선 성 확인서 )학년 ( )반 ) ), 행정실 ( 신청하였음을 일		)

### 【서식】

핰	적	교	무	교 감	교 장

# 재 입 학 원 서 (학교용)

학생 성명		-	성 별 남 . 여	생년 생	년월일 -					
현 -	주 소									
자	퇴학 년	월 일	년	월 일	자·퇴 사					
보호 <sup>지</sup> 성 명					연락치	터 <mark>(집)</mark> (휴)				
위와 같이 자퇴·퇴학하였던 바, 제 _ 학년에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지원 보호		妇	일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	)	고등학	교장	기하				

	고;	등학교	학년결정 (	입학 (	신청서	H	접수 번호	
	주 소							
	성명		성 별	남·여	생 년	! 월 일	•	생
	조 라	( )년 ( )년		학교 ( 검정고시	)학년 합격	(재학·수료	·졸업)	
지		구 분	기관(시설)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원	학 교	고등학교		년 (	월 일 년		월 일	( )학년 (재학·수료)
J	외	학력인정		년 (	월 일 년	~ 년 개월간)	월 일	( )학년 (재학·수료)
자	·	기 관		년 (	월 일 년	~ 년 개월간)	월 일	( )학년 (재학·수료)
	心 人山	국 내		년 (	월 일 년	~ 년 원 개월간)	릴 일	( )학년 (재학·수료)
	경 해	비정규		년 (	월 일 년	~ 년 원 개월간)	월 일	( )학년 (재학·수료)
		교육시설		년 (	월 일 년	~ 년 원 개월간)	월 일	( )학년 (재학·수료)
보	호자	성 명		연락?	너하 누	집) 휴대전화)	(	
			학년결정 입학을 기재 사항이 사실고		·	•		
			20 년	월	잍	<u>!</u>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경	당 귀	하			

###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처리요령

#### I . 목 적

□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처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로 관계 인의 이해를 돕고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Ⅱ.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 교육부고시 제1998-6(1998.4.23)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일 반귀국자 전·편입학업무 처리요령

#### Ⅲ. 귀국학생 등의 구분

-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Ⅳ.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및 허가

#### □ 고등학생

- 고등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에 직접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음.

#### V. 입학·전학·편입학 학년결정

#### □ 학생(초・중・고등학생)

- 국내 및 국외에서 이수한 수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산정된 학년으로 결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내외 수학기간과 각급 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 한다.

- □①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가 국내 초·중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국내 초·중학교에 최초로 신입학하는 경우
- □② 우리나라와 학제 차이로 인하여 국내외 수학기간의 합산이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년보다 낮게 학년 배정을 받은 경우
  -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수학은 수학기간으로 인정하되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수학은 수학기간으로 불인정

#### Ⅵ. 귀국학생 학적 처리 방법

#### 1. 귀국학생 구분

#### 가. 인정유학

- 예·체능 특기생으로 당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초· 중학생
- 외국의 정부 등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초·중·고등학생
-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한 초·중·고등학생
- 이민, 부 또는 모의 해외파견 및 취업 등으로 부 또는 모와 같이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학생도 인정 유학 생에 포함

#### 나. 미인정유학

- 인정 유학생 이외의 유학생으로 외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체험학습, 개인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인정 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귀국학생 출국 전후 처리 절차

#### ◎ 고등학생

- 1) 인정유학
  - 부모가 증빙서류(파견 또는 이민 서류)와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학교장은 자퇴 처리한다.
- 2) 미인정유학
  - 부모(보호자)가 자퇴서를 제출한다.
  - 학교장은 자퇴 처리한다.

#### 3. 귀국학생 귀국 후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처리 방법

#### ◎ 고등학생

- 1) 인정유학(특례입학 허가)
- 부모가 증빙서류(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와 재입학 희망원을 학교에 제출한다.
- 학교장은 국내 학적과 외국의 학적을 합산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재입학하 도록 허가한다. 특히, 특례입학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한다.

- 학교장은 결정한 학년보다 부모가 높은 학년을 요청하면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모가 요청한 학년에 배정할 수 있다.

#### 2) 미인정유학

- 부모가 증빙서류(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와 재입학 희망원을 학교에 제출한다.
-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특례입학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한다.

#### 4. 귀국학생 학년 결정 방법

- 출국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수료한 학교의 학년 및 학기에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명기한 재학 기간(1개년에 2학기인 경우는 재학 학기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1개년에 3학기인 경우에는 2학기를 우리 1학기, 3학기를 1년으로 반영)을 우리나라 학제에 합산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 미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의 학제 차이로 인해 중복 수학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학제 차이가 아닌 경우의 중복 수학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Ⅷ. 구비 서류

#### □ 학생(초・중・고등학생)

-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편입학, 재입학)신청서 1부
-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 국내의 최종학교 재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외국 소재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발행)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의 외국 근무사실 입증서류(국가 또는 회사의 외국 근무를 명령한 공문 서) 또는 외국에서의 사업자 등록 입증서류(외국 소재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발행)
-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학력보증서만 필요
-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대신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음.
- ※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신청서는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일반귀국자 전·편입학업무 처리요령의 관계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록】귀국자 입학업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요령 반영

[교육부고시 제1998-6호(1998. 4. 23.)]

#### 1 . 목 적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업무처리 관련 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내용으로 하나 전·편입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Ⅱ. 근 거

#### ◎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부여(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 등 전형 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도교 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 Ⅲ. 특례입학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 가목)	<ul> <li>인정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li> <li>미인정유학으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 면서)</li> <li>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li> </ul>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외국인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 IV. 특례입학 처리절차

#### 1. 특례입학의 적용

가. 특례입학 내용

구 분	입 학 정 원	선발방법	근 거
중 학 교	정원 외 전입 (해당학년 정원의 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2호 및 제82 조제3항
고등학교	정원 외 전입 (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 제82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2호 및 제82 조제3항
중·고에 준하는 각종학교	정원 외 전입 (해당학년 정원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 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정하 는 방법	당해학교 학칙

#### 나. 특례입학 허용

-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기에 상관 없이 특례입학을 허용한다.
- 2)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특례입학은 중학교 제1학년 2학기 귀국하여 전·편입한 자를 허용하며, 중학교 제1학년 1학기까지 귀국하여 전·편입한 자는 특례입학을 불허한다.
- 3)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특례입학의 기본조건

- 가) 인정유학이며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6개월이상 합법 체류하고 해당 국 정부가 인정한 정규의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한 경우
- 나) 미인정유학으로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다) 인정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6개월에 미달된 때에는 전라북도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시)에 설치된 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대신함)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특례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4)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이외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귀국 학생의 특례입학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2. 특례입학 학년

- 특례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동일학년·동일학기 이하로 전·편·신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 전·편·신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 보다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인정한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 보다 높여 전·편·신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과목별이수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3.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가.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나. 외국학교 인정
  - ㅇ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ㅇ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

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 4.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 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ㅇ 거주 기간 내에서 해당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ul> <li>○ 거주 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li> <li>○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li> <li>○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li> </ul>

#### 5. 특례입학 절차

※ 각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신입학을 허용

#### 6. 구비서류

- 전라북도교육청은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전라북도교육청은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입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 거나 서식 일부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해당자별 귀국자 구비 서류 목록

해당자별		과학기술자	북한	외국 (제2호		Olbl	
구비서류	악하고 - 귀국   한 국민(제2   호가목)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나목)	이탈 주민 (제3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일반 귀국자	비고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0	0		0	0	0	재학학년, 재학 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 업)증명서	0	0				0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학생)	법무부출입국관 리사무소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0			순수외국인은 가 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 부증명서
전가족주민등록등본	0	0				0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 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0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0)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 소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0						재외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0				해당기관장 발행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과 : 000000(생년월일)~3000000(남), 4000000(여)

- 2000년 이후 출생자 (남 : 3), (여 : 4)

- 1999년 이전 출생자 (남 : 1), (여 : 2)

### 특례입학자 구비서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 1. 구비서류

해당항목	서 류 명	비고
필수	<b>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b>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된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한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이 공증한 서류 인정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년월일, 재학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또는 출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 사본(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발급처 : ⑥김포국제공항 ⑥공항터미널 ⑥정부종합청사앞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⑥목동 출입국관리 사무소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필수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부, 모, 학생)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것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 부도 가능함)
해당자	3국 수학인정서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관장 확인)
해당자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 영주 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양식 비치됨

★ 영문(아포스티유 협약서)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절차

- 가.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및 귀국자 자녀 편입학 배정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함.(홈페이지에 양식 탑재되어 있음)
- 나.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전·편·신입학 신청
- 다. 해당 학교 학년 정원의 2%까지 정원 외 배정

#### [서식 1] 특례입학자 고등학교 신입학 신청서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남.여	1	사진 (3cm × 4cm)				
	국내ና	연락처		(주	·소)						(₹	 전화반	<u> </u> 호)			(0 0 1 1 1			
	기 간					국내학교 학 학 력 사 항 과정에 해당하는 국기 과정							·교소재지 도시 명		정규 학교 여부				
	. ~					학교	ন ৢ	학년 (여	정).수료	.재학증	5								
		~ .				학교	1 ≧	학년 (여	(정).수료	.재학증	5								
		~ .	•			학교	ı ⊆	학년 (여	(정).수료	.재학증	5								
		~ .				학교	1 5	학년 (여	(전).수료	.재학증	5								
		~ .				학교	1 5	학년 (여	(전).수료	.재학증	5								
		~ .	•			학교	ন ≧	학년 (여	정).수료	.재학경	5								
관계	<i>전</i>	병 명	プ <del>イ</del> ニ	7	거 (>	주시기 기 간)		여 발급 (유효			등	외국민 록시기 기 간)	]	ラ ア デュ	채류:   	기간 제 3 국	직	업	비고
본인	해	강없음			( 년	- 개월 일	!)	( .	. )	(	년	- 개월	일)				하 없	당음	
부					( 년	- 개월 일	!)	( .	. )	(	년	- 개월	일)			해당 없음			
모					( 년	- 개월 일	()	( .	. )	(	년	- 개월	일)			해당 없음			
고등	학교	<u>'</u> 에 입호	학하	<u>ト</u> ユン	자 아	래 구비	]서:	류를	갖추여	거 고	등	학교	입학	을 /	신청	합니	다.		
					20		본	1		월			일						
										지은	원지	}						(인	)
										보る	호지	ŀ						(인	)
(	(			)	학교	.장 귀히	5}												

#### ※ 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기입
- 신입학·편입학 해당란에 ○으로 표기. (편입학은 학년표시)
-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후 "원본대조필"을 기재하고 날인

	특례입학자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sup>접수</sup> 번호												
	주소										I		
	성명				성 별	남.여	생 년	일 일		19 .	. ?	<b></b>	
지	국 내 학 력		년	월 일끼	지 (	,	)학교 (	)학년	(재학.4	(재학.수료.졸업)			
01		국 명	3	학교	명	재	학 기	간	재 호	남학 년	국내해당학년		
원							. ~ 년	 개월)	( (재호	)학년 낚.수료)	(중.고 (	1등학교) )학년	
자	국 외 학 력						. ~ 년	· · · 개월)	( (재호	)학년 낚.수료)		1등학교) )학년	
	9 9						.~ 년	· · · 개월)	( (재호	)학년 낚.수료)	(중.고 (	2등학교) )학년	
							.~ 년	· · · 개월)		)학년 낚.수료)		2등학교) )학년	
	주 소								연 전호	락 라번호			
보	성 명								지원 관	자와의 계			
호		국 외 근 무 처											
자	근무처	국 외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u>-</u> )		
,		국 내 근 무 처		_									
1	입 국 월 일	지 원 자 .	출 국	년			보호 자			년		일.	
		<u> </u> 귀국하여	입 국 며 편입	년  학하고자		<sup>일.</sup> 니 제( ) <sup>5</sup>	학년에	│ <sup>입 =</sup> │ 배정ㅎ		<u>년</u> 독시기 <sup>비</sup>		<sup>일.</sup> 다.	
				과 다를 경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	)학교	1장	귀	ठेेेेे					

<sup>○</su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로(이나) 정원(내·외) 편입학

<sup>○ ( )</sup>고등학교 ( )학년 정원( )명중 귀국자 자녀( )명

### 일반귀국자 전·편입학 업무 처리요령

#### I. 일반귀국자의 정의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 Ⅱ. 일반귀국자의 학력 및 학년 인정

- o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o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수학 후 귀국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수학 후 귀국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는다.)
- o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 o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킨다.

#### Ⅲ.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o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o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 정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IV.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o 일반귀국자가 전.편입학할 학교에서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 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할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일반귀국자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해당항목	서 류 명	비고
필수	<b>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b>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명시한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반드시 입·퇴학년월일 및 재학 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된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한 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이 공증한 서류
필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년월일, 재학 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또는 출입국 사실이 기록된 여권 사본(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금번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해당자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권(시민권)사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별도양식 비치됨

★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 영문서를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배정절차

- 가. 일반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함(홈페이지에 양식 탑재되어 있음.).
- 나.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적교에** 전·편·재입학 신청(단, 학교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일반귀국자 고등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sub>번호</sub>												
	주소											
	성명				성 별	남.여	남.여 생년월일					생
지	국 내 학 력		년	월 '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	병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재 학 학 년		국내	해당학년
원							·~ · 년 기	 H월)		)학년 학.수료)		2등학교) )학년
자	국 외 학 력							 H월)	( (재 <sup>호</sup>	)학년 박.수료)	(중.5)	그등학교) )학년
							-	 H월)	,	)학년 학.수료)		그등학교) )학년
								 H월)	( (재호	)학년 박.수료)	(중.고	7등학교) )학년
	주 소								연 전 전	락 학번호		
보	성 명								지원 관	자와의 계		
호		국 외 근 무 처								·		
자	근무처	구 이										
'		국 내 근 무 처										
출 입 국 년 월 일		۸	출 국	년	월	일	보호자	출	3	년	월	일
			입 국			일 입 -						
				학하고지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기					인 인
( )학교장 귀하												